

정치와 교육

김 송 일
교육학과

<요 약>

모든 사람들이 인격체로서 자유로운 계발이 가능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유공동체를 형성시켜야 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가까운 그리고 먼 미래를 향한 정치적 목적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을 우리 사회에 실현시키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공동생활을 위한 정치적 기초를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와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과제는 민주화를 위해서 부터 아래로의 하향적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적 사회성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합리성을 통하여 아래로부터 위로 촉진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정치교육은 민주적 의식을 갖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현실속에서 정도를 인식하며 가능한 개선을 추구하는 민주적 인간을 양성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는 민주주의교육을 지향하여야 하며, 또한 정치적으로 성숙된 인간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인격체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계발을 위한 정치적 기초를 창출하고 그 결과 국가와 사회내에서 인간다운 공동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Politics and Education

KIM, SONG—IL
(Dep. of Education)

<Abstract>

Es ist kein Zweifel über die Tatsache, dass ein freies Gemeinwesen als ein freiheitlich demokratischer Staat vorzuziehen ist, in dem alle sich als Personen frei entfalten und menschenwürdig zusammenleben können. Es muss eines der politischen Ziele für die nähere und weitere Zukunft sein, demokratische Ideen und Prinzipien in unserer Gesellschaft zu realisieren, und damit die politische Grundlage für ein menschenwürdiges Zusammenleben zu

schaff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die Aufgabe der Schule und der schulischen politischen Bildung vor allem darin zu sehen, dass durch kritische Rationalität in dialogischer Sozialität die Demokratisierung nicht von oben nach unten verordnet, sondern von unten nach oben aufgebaut wird. Es gilt also als Maxime für die politische Bildung aufzustellen, sie habe demokratische Menschen heranzubilden, die sich mit demokratischem Bewusstsein in der gesellschaftlichen,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Wirklichkeit zurechtfinden und nach möglichen Verbesserungen streben. Daher muss sich die Schule allgemein an der Erziehung zur Demokratie orientieren, und eine politische Bildung vermitteln, die auf die Heranbildung des politisch mündigen Menschen zielt. Eine so verstandene politische Bildung muss sich darum bemühen, die politischen Grundlagen für die freie Entfaltung des Menschen als Person zu schaffen und demzufolge das menschenwürdige Zusammenleben in Staat und Gesellschaft zu verwirklichen.

I. 서 언

Aristoteles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서 이해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관의 근본핵심은 인간은 사회와 결별하여 살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존하는 관계속에서만 그 존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인간은 국가와 사회라는 일정한 정치적 공동체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의존적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개인이 사회를 떠나서 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매우 어렵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 일정한 형태의 국가나 사회내의 가족, 교회, 학교, 직장, 정당, 각종 사회단체와 같은 다양한 일연의 조직에 속하게 되며,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저마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이 정치적 동물인 이유가 결코 우연이나 불의의 소치때문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되고 또한 그렇게 이해된다.”¹⁾ 할지라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하나의 공동체내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한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서의 인간의 정치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발생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질적, 또는 양적수준에 있어서 각기 상이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인간들의 공동체생활이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선 다양한 욕구충족의 실현을 위한 마찰의 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야기되어지는 갈등상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

*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양참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서울: 비영사, 1982), p. 52.

가 무엇보다도 먼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진 일정한 형태의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 또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질서체계를 바탕으로 하여서만 인간의 공동체생활은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기본원리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공동체구성원 각자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후세대에 전수됨으로써 공동생활의 기초로서 수용되어지고 창조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속적인 공동체생활의 가능성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또는 기타 사회단체에서 교수 및 학습과정을 통하여 타인과의 상호의존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초원리들을 내면화함과 아울러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개선·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신과 소속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공동체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조화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데 달려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의 원천적 관심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정치교육의 기원은 인류사와 같이 오래되었다.”²⁾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교육이 정치발전과정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한 인식이 점증함에 따라 정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서독의 경우 정치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서독의 각국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치교육은 각주에 따라서 사용되는 교과와 명칭은 다르다 할지라도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일정한 교과목으로서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도 예컨대 교회, 정당, 노동조합, 성인학교 등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명칭과 강조되는 내용은 약간씩 달라져 왔으나 일반적인 통합개념으로서의 정치교육은 8·15 해방이후 각급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주목하여야 될 점은 최근 모든 부문에 대한 점증하는 민주화요구와 함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치교육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도 정치교육이 한편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신념과 태도를 가진 국민들을 길러야 하겠다는 당위적인 필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체제의 유지·발전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오용(Politisierung)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부터 야기된 결과로 보인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정치교육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치교육의 목표, 내용선정, 교수방법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치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내지 재정립시키려는 학문적 노력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정치교육을 보는 시각을 좀 더 학문적으로 종합화·체제화시켜 정치교육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재정립시키려는 학문적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본연구에서는 정치교육의 개념을 정치와 교육의 관계속에서 새로이 규명하고, 정치교육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정치교육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검토하며 동시에 그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교육은 인간

2) Kurt Gerhard Fischer : Einführung in die politische Bildung, 2. durchgesehene Auflage, Stuttgart, 1971, S. 9.

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기본전제로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속에 제시되어 있는 민주적 인간상에 대한 논의와 규명이 선행되어 진다.

II. 민주주의적 인간이해

8·15해방 이후 민주주의사상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건국의 기초이념이 된 이래 민주주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기본질서의 핵심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으나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들이 아직까지 공존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처럼 복합적인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해하기 힘든 말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국가도 자기의 헌법이 민주적이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며, 어떤 정치가도 자기 권력의 정통성의 기초가 민주주의 이념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³⁾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민주주의는 어떤 정적인 것이거나 완성된 형태의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으로서 모든 힘을 계속 투입하여야 되는 영구적인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⁴⁾ 뿐만아니라 요즘에는 민주주의란 말 앞에 각종 수식어가 붙여져 사용되고 있으며⁵⁾ 때로는 단순한 슬로건, 또는 프로그램화된 의도표명을 위해 오용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정치적 상투어로 사용되고 있어 민주주의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Manfred Hättich의 “자유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는 없다.”⁶⁾라는 언명은 민주주의라는 명칭은 즐겨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개념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의미가 동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적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지배형태(Herrschaftsform)나 국가형태(Staatsform)⁷⁾, ②생활양식(Lebensform)⁸⁾, ③양자의 통합 즉 국가형태로서 뿐만아니라 생활양식(nicht nur eine Staatsform, sondern vor allem auch eine

3) Frank Grube/Gerhard Richter: *Demokratiethorien*, Hamburg 1975, S. 9.

4) Fritz Eler: *Politik für Deutschland. Eine Dokumentation*, hrsg. von Wolfgang Gaebler, Stuttgart 1968, S. 280.

5) 이극찬, <정치학> 제3전정판, (서울: 영문사, 1987), p. 452-453 참조.

여기서 이극찬은 “민주주의란 말 앞에다 각각 다른 형용사를 붙여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기본속성은 변함이 없을까? 아니면 그 명칭을 달리함에 따라서 그 내용은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과 함께 형용사가 붙여져서 사용되고 있는 45가지의 민주주의 표기 예를 들고 있다.

6) Manfred Hättich: *Demokratie als Herrschaftsordnung*, Köln 1967, S. 12.

7) 다음의 학자들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Manfred Hättich: *Demokratie als Herrschaftsordnung*, Köln 1967, Lothar Bossle: *Domokratie ohne Alternative*, Stuttgart 1972, Dieter Grosser u.a.: *Politische Bildung* 3. Auflage, Stuttgart 1978.

8) 다음의 학자들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John Dewey: *Demokratie und Erziehung*. Braunschweig 1949, Lothar Ross: *Domokratie als Lebensform*, München 1969, Friedrich Oetinger: *Partnerschaft. Die Aufgabe der politischen Erziehung*, 3. Auflage, Stuttgart 1953.

Lebensform)⁹⁾ 이처럼 민주주의의 개념이 다의적이며 다양하여 한가지로 정의를 내리기 매우 어렵다 할지라도 전술한 바와 같은 개념범주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기본이념을 Hans-Günther Assel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은 서로 다른 집단적 관점들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요구되어지는 원칙들이다.”¹⁰⁾

이는 곧 민주주의를 어느 형태의 것으로 간주하던지 인간의 존엄성(Menschenwürde)과 자유(Freiheit)와 평등(Gleichheit)의 보장과 실현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이념이란 곧 Immanuel Kant가 정의한 바와 같이 인간은 합목적적인 존재로서 어떤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또는 외부결정의 대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보장속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자유로운 자기 결정을 통하여 자기신장과 자기발전 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격체(Person)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제시하고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이는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상태로 머물러서는 아니되며 우리의 현실생활에서 실천적이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학교는 교육적 도움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주적인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그들이 제반 도덕적·사회적 규범들과 그들의 구속력을 외부의 상요와 무관하게 스스로 인식하고 내면화하며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지닌 성숙된 인간으로 이끌어 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학교교육의 목표는 성숙된 인간의 양성이어야 하며 이때 학교에 부과되는 일차적인 교육적 과제는 민주주의교육(Erziehung zur Demokratie)인 것이다.

III. 정치와 교육의 관계

Herman Nohl은 1935년에 처음 간행된 그의 저서 “독일의 교육운동과 그 이론”의 제2편 서문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한 국민을 생성시키는 데에는 두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와 교육이다.”¹¹⁾ 이 문장은 민족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정치와 교육의 공동책임성을 아주 압축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사하게 Karl Jaspers도 “우리의 모든 미래는 정치적 행위와 교육적 행위에 달려 있다”¹²⁾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때 정치와 교육은 우리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밀접한 관계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양자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그 기본관계를 Josef Derbolav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9) Willy Brandt: Plädoyer für die Zukunft. Beiträge zur deutschen Politik, erweiterte Neuausgabe Frankfurt am Main 1972, S. 71.

10) Hans-Günther Assel: Demokratie auf dem Prüfstand, 2. Auflage, München 1974, S. 54f.

11) Herman Nohl: Die pädagogische Bewegung in Deutschland und ihre Theorie, 9. unveränderte Auflage Frankfurt am Main 1982, S. 228.

12) Konrad Schön: Der Begriff der politischen Bildung, Ratingen 1964, S. 12에서 재인용.

첫째로 정치와 교육은 그 대상에 대한 접근양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교육의 경우 수업은 한 교실에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진행되나 궁극적인 교육적 의도는 한 학생 즉 한 개인과 관련되어지며 일반적으로 이때의 교육목표는 성숙된 인간의 양성에 두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육이라함은 어떤 제조(Machen)가 아닌 잠재적 능력의 개발을 의미하며”¹³⁾, 효과적인 학습은 개개인의 자기발견으로 부터 비롯된다는 의미에서 Derbolav는 교육적 의도의 특징을 Sokrates의 문답법(Mäeutik)에서 찾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치의 관심은 전적으로 집단을 향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정치는 교육의 경우처럼 청소년 개개인이 아닌 성인사회를 목표집단으로 삼고 있다”¹⁴⁾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성숙을 가능케 하려는 교육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는 그 대상인 개인의 성숙을 전제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치는 목표집단의 의도를 규범화 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공동복지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인간의 미래적 행위동기를 결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 결과 정치는 공동체내에서 그의 목적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과 같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달성하려 시도하며, 그러한 권력(Macht)나 지배(Herrschaft) 등은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치와 교육의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양자는 동일시되거나 동일선상에서 대응하게 취급되어서는 아니되며 서로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두번째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차적으로 정치는 교육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진다. 정치는 교육적 행위를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며, 때문에 정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를 위하여 정치적 결정이나 국가시책 등을 통하여 교육경제적 제반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교육법, 교육지침,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등 교육의 실제를 위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종합체제와 규칙들을 결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은 분명히 정치에 종속적이며 정치는 그 위상에 있어서 교육의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교육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정치는 교육의 전달기능을 통하여서 정치체계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전제들을 조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은 정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비록 정치는 교육에 대하여 상기한 바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근본에 있어서 정치의 자기유지와 발전은 교육적 기능에 의존적이며,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정치로 부터 도외시될 수도 또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양영역의 이와 같은 상호영향관계를 Friedrich Schleiermacher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교육학과 정치학의 두 이론은 아주 완전히 서로 맞물리어 있다. 양자는 원리적인 학문으로서 한가지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교육학이 정치학의 보충적 요소가 아니거나 또는 완성된 학문으로서 정치학의 곁에 존재하지 않는한 정치학은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가내에서 공동생활이 점점 혼란해지고 이론적으로 잘못 이해되어질수록 청소년세

13) Josef Derbolav: Pädagogik und Politik, Stuttgart 1975, S. 13.

14) A. a. O., S. 15.

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감화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견해는 더욱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대상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교육학은 순수하게 윤리학과 관련된,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된 응용학문으로서 정치학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¹⁵⁾

결론적으로 교육과 정치는 분리되어 고려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양자는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속에 있으며, 이런 상호종속성에 대한 인식속에서 양영역은 하나의 공통된 관점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래서 Derbolav는 “정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정책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가나 사회에서 앞으로 수행해야될 과제에 대한 준비를 담당하는 것은 정치교육이다”¹⁶⁾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세번째의 견해가 제시될 수 있으나 이는 양영역의 아주 의문시되는 관계로서 “교육화된 정치(Pädagogische Politik)” 또는 “정치화된 교육(Politisierte Pädagogik)”¹⁷⁾으로서 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영역중 하나는 절대적으로 우위를 독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한편은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정치가 교육의 개선을 위한 도구로 오용되거나 또는 교육이 정치적 권력이나 이데올로기의 단순한 성취도구로 비하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정치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는 우리의 관심밖임으로 여기서는 더이상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강조되어야 될 점은 정치와 교육의 관계중 두번째의 관점, 즉 양자는 서로 다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완적인 요소로서 함께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내에서 교육과 정치는 올바른 관계정립이 이루어져야 되며 교육편에서는 정치를 위해, 마찬가지로 정치편에서는 교육을 위해 진력해야 할 것이다.”¹⁸⁾ 이는 정치교육의 이론과 실제 뿐만 아니라 민주적 교육정책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것이다.

IV. 정치교육의 개념과 목적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정치교육은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학문적 관점, 정치적 이데올로기, 또는 이해관계 등에 따라 그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정치교육의 개념들을 열거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정치와 교육은 상호의존적이며 정치교육의 개념은 바로 이와같은 양자의 상호보완관계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정치교육은 당연히 교육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로서 또 교육적 의도가

15) Friedrich Schleiermacher : Pädagogische Schriften, Bd 1. Die Vorlesungen aus dem Jahre 1826, hrsg. von Erich Weiger, Frankfurt am Main 1983, S. 12.

16) Josef Derbolav : Pädagogik und Politik, a. a. O., S. 7.

17)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계책 p. 16-17까지와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Giuseppe Catalfamo : Ideologie und Erziehung, übers. von Liselotte Reich - Coregliano und durchges. von Winfried Böhm, Würzburg 1984.

18) Hans - Hermann Groothoff : Einführung in die Erziehungswissenschaft, RatingenKastellaun 1975, S. 189

정치적 의도보다 우선시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입장은 정치영역에 대한 교육이 기여하는 특별한 기능으로서 정치안정의 기초제공 및 정치체제의 발전적 개선에의 이바지라는 두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 간과되어서는 아니될 중요한 점은 인간의 정치적 행위를 사전에 미리 계획되고 결정된 일정한 틀에 맞추도록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단지 보다 의식화시키어 책임있게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여야 된다는 사실이다. 정치교육은 정치적 활동은 아니며, 정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나 정치와 동일시되어서는 아니되는, 교육의 시각에서 파악되어지는 교육적 행위임을 감안할때 정치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적 측면, 보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현존하는 정치제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본 인간의 정치적 차원에 대한 해명”¹⁹⁾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란 J Derbolav의 규정처럼 학생들이 국가와 사회에서 수행하여야 될 그들의 과업을 사전에 준비시켜주는 교육적 도움내지는 생활도움의 제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조직화된 정치교육을 통하여 준비를 갖추어야될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의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이미 앞서 논의한 교육의 기본요구, 다시 이야기하면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의 인격체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학교는 교육적 도움 내지는 생활도움의 제공을 통하여 성숙된 인간을 양성하여야 된다는 학교의 교육목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한 인격체의 자기결정과 자아실현의 완전한 가능성은 오로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보장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민주주의는 성숙된 인간에 의존적이므로 민주주의교육은 학교의 기본과제로서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교육적 기본입장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제공되는 모든 교육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여기에 정치교육이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성숙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환언하면 학생들에게 정치적 성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도움의 제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성숙이란 민주주의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적인 그리고 정치적·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독립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정치적 성숙의 보다 본질적인 요소는 정치적 사태를 스스로 올바르게 직시하고 판단하며 어떤 행동을 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에 대한 내적인, 외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바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정치와의 만남에 있어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정치적 성숙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Arnold Bergstraesser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교육의 목적은 이를 새롭게 설정해보고자 하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정치교육의 교육목적은 정치적으로 결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그리고 동시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품의 내적 형태의 자기형성이다. 즉 정치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란 정치적 존재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고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성

19) Felix, Messerschmid: Politische Bildung - “Opium fürs Volk?” in: Neue Sammlung, 8. Jahrgang, 1968, S 224.

숙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²⁰⁾ 이를 기초로 하여 학교에서 실시되는 정치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정치적 결정과 입장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자주적인 판단력과 비판력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치적으로 성숙된 인간의 양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교육은 한 인격체가 국가와 사회에서 민주적인 공동생활을 함께 형성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정치적인 자기결정을 통하여 자기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교육적 도움의 제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처럼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국가적 사회적 측면과 동시에 개인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정치교육에 대한 기대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될 수 있다: “정치교육은 일차적으로 복잡한 역사적·사회적 현실속에서 인격체로서의 계발을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학생)들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정치교육은 각 개인이 정치적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함으로 사회와 그 사회의 정치적 질서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²¹⁾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국가와 사회속에서 학생들이 꼭 인지하여야 될 과제들을 요약하여 제시한다면 그것은 합리적 판단력,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비판능력과 책임의식의 함양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한 개인이 국가와 사회내에서 보다 많은 민주주의, 즉 보다 많은 자유, 보다 많은 평등, 보다 많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고 성숙된 정치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기본전제들인 것이다.

민주적인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또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정치교육은 이의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며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는 자질을 배양시키는 교육적 노력을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여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을 깨우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치교육이 추구하여야 될 궁극적인 교육목적인 것이다.

V. 정치교육의 기능

Rolf Schmiederer는 정치교육이 갖고 있는 기능을 크게 두가지로 대별하여 그 첫째는 “미래를 지향하는 진보적이며 현존하는 사회적 상태에 대한 초월적인 기능”이며, 두번째는 “긍정적이며 현상태유지 내지는 현존하는 상태를 방어하는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²²⁾

정치교육의 기능에 관한 극단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이런 상반된 주장들은 특히 서독의 경우 그간 학술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쟁점이 되어왔으며 오늘날 까지도 정치교육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대표적인 토론주제로 간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이론전개의 양극화 현상이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조차 조금도 완화되지 않은채 적대적인 상호저항속에서 그대로 표출됨으로서 실제 정치교육활동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20) Arnold Bergstraesser: Politik in Wissenschaft und Bildung, 1. Auflage, Freiburg 1961, S. 248.

21) Dieter Grosser u. a.: Politische Bildung, 3. Auflage, Stuttgart 1978, S. 12.

22) Rolf Schmiederer: Zur Kritik der politischen Bildung, Frankfurt am Main 1971, S. 22 - 23.

우리들의 기본이해에 따를 때 학교는 더이상 현존하는 사회·정치적 구조와 문화에로의 단편적인 순응이나 단순한 연습을 위한 기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육은 어떤 훈육이나 강제속에서 제공되어지는 가치개념들에 대한 단순한 적응기제 이상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성인세대를 교육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사회전복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기관을 간주”²³⁾하는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학교교육은 획일적인 정치교화(Politische Indoktrination)의 목적에 오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교육은 정치적·사회적 적응태도를 주입시키기 위한 수단도 또는 정치적·사회적 혁명을 초래하기 위한 수단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인간을 정치적·사회적 목적에 헌신하며 그에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을 습득하여 수행하도록 유인하는 단순한 사회적 위임을 충족하는 역할로 비하되어서는 아니되며, 또 현존하는 모든 체제를 완전히 거부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구조변화를 위한 혁명 의식의 고취 내지는 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Wilhelm Wortman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로 부터의 지배나 아래로 부터의 급진주의”²⁴⁾는 모두 민주주의의 적인 것이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바로 이런 이중위험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의 개념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본 John Dewey의 시각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교육은 “과거에 대한 미래의 적응과정이며 동시에 미래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과거의 개발과정”²⁵⁾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Dewey식 관점의 핵심은 미래를 위한 발전의 가능성은 반드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숙고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전통·규범과 제도들의 장점을 수용하여 그에 일맞게 행동하는 한편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단계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적절한 형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교육이 그의 자명한 기능목적, 즉 이루어진 질서의 유지 이외에도 너 많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보다 나은 미래사회를 가능하게 하고 건설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정치적·사회적 실체를 심사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때 정치교육에 부과되는 주문은 다름아닌 민주주의질서의 유지와 현존하는 사회의 개선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의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위하여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보수적이고 전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정치교육의 이런 기능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양기능으로 부터 야기되는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로 수용하며 보완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속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 맥락속에서 양기능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여야 하며, 정치교육은 두가지 기능들이 변증법적인 화합속에서 수행될 때만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23) Rolf Schmiederer: Zur Problematik politischer Bildung in der Schule, in: Heinrich Schneider(Hrsg.): Politische Bildung in der Schule, Bd. 1. Darmstadt 1975, S. 280에서 재인용.

24) Wilhelm Wortmann: Demokratie als politische Bewusstseinsbildung, Heidelberg 1968, S. 128.

25) John Dewey: Demokratie und Erziehung, a. a. O., S. 112.

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은 청소년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속으로 유능하게 뛰어 들고, 또 제시되는 개선을 향하여 유능하고 힘차게 진입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²⁶⁾는 F. Schleiermacher의 표현은 아주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다.

VI. 정치교육의 과제

국가나 사회속에서 민주주의 실현과 계속적인 발전에 대한 요구는 정치적인 관심사이며 동시에 교육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최우선적인 1차적 과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며 민주주의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은 그 근본에 있어서 최소한 다음 두가지 측면이 고려된 가운데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학생들의 마음에 심화시켜주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의 원리와 전제들을 의식적으로 수용할 때만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규범과 가치와 기본개념들과 관련된 중요하고 정확한 지식들이 전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국가와 사회에의 기본구조와 정치질서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도 계속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중요하고 의미있는 기초로서 간주된다 할지라도 정치교육을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은 이성적이기는 하지만 조작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또한 인간은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의 작품,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로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에 있어서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이 강조된다면 이는 정치교육의 자기비하인 것이다.

두번째 측면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학생들을 민주주의자로 양성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교육의 핵심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통한 내용적인 영향력의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내에서 하나의 인격체가 갖고 있는 자유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일이다. 이는 외부로 부터의 결정과는 반대로 개인의 자율적인 자기결정의 보장과 실현의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적인 구조란 관료주의적인 국가와는 반대로 가능한한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자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²⁷⁾ 따라서 학생들의 정치적 성숙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독자적인 관점을 의미있게 선택하고 신념을 확실히 하며, 알리며, 또한 자신의 관심사항을 확고히 하여 추구할 수 있을 정도”²⁸⁾의 정치적 자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결의 능력은 국가와 사회에서 자주적인 정치생활을 스스로 형성하며 국가와 사회생활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정치적 자결능력의 증진을 도외시한채

26) Friedrich Schleiermacher : A. a. O., S. 31.

27) Volker Briesse u. a. : Einleitung : Welchen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 politische Bildung unterliegt in : Ders. u. a.(Hrsg.). Entpolitisierung der Politikdidaktik? Weinheim 1981, S. 13.

28) Heinrich Schneider : Einleitung, in : Ders.(Hrsg.) : Politische Bildung in der Schule, Bd. 2. Darmstadt 1975 S. 27.

실시되는 정치교육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희석된채 보람이 없는 비생산적인 것이 되고 말것이다.

자결의 의미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개인의 의식적인 자기관념속에서 제시되는 척도에 따른 결정”²⁹⁾으로서 이해되어진다. 따라서 정치적 자결과정에서는 개인 주의적인 맹목성이나 이기적인 경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타인과의 또는 사회와의 기본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 결과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통찰력의 올바른 형성, 즉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력과 비판능력이 필요시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교육의 두번째 과제는 학생들에게 자주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거나 타인의 정치적 결정을 비판적으로 사전에 승인하거나, 함께 승인하거나, 또는 사후에 승인하는 능력”³⁰⁾을 의미하는 정치적 판단력을 제고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출생과 동시에 이미 정치적 인간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미래의 정치가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과제는 아니라 할 지라도 국가와 사회의 영역속에서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준비성과 능력을 일깨워주고 신장시키는 것은 즉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자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정치교육에 위탁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정치적 사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거나 외부의 결정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며 추종하지 않기 위하여 독자적인 합리적 숙고를 통하여 정치적 실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정치교육은 학생들이 “정치와의 만남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과 관심, 필요, 신념, 목표들을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판단력”³¹⁾을 증진시키는 일에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치적 판단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정치적 맥락과 조건들에 대한 통찰력의 함양이므로 판단력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과 능력을 키워준다는 의도하에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교육의 대상범주에는 정치현실의 모든 영역이 항상 포함되어야 한다”³²⁾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잡한 정치적 맥락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분석하여 올바르게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누구든지 자주적으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되는 정치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인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교육에 부과되는 세번째 과제는 정치에 관한 이론적 기초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교육은 정치의 기본개념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 즉 정치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29) K. D. Hartmann : Psychologische Voraussetzungen der Selbstbestimmung und Selbstverwirklichung, in: Ders.(Hrsg.): Politische Bildung und politische Psychologie, München 1980, S. 222.

30) Heinrich Schneider: Einleitung, in: Ders.(Hrsg.): a. a. O., S.29.

31) Wolfgang Sander: Politische Bildung als Fach und Prinzip, in: Ders.(Hrsg.) Politische Bildung in den Fächern der Schule, Stuttgart 1985, S. 22.

32) Lothar Bossle: Politische Bildung - Durchbruch oder Krise? Mainz 1966, S. 37.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치의 어원은 국가를 뜻하는 그리스어 Polis이지만 오늘날 정치의 대상과 범위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 어원적 유래로 부터 정치의 개념을 추론하는 데는 개념규정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치의 영어식 표현으로 그 개념분석을 기한바 있는 Karl Rohe의 시도를 인용하여 정치의 세가지 서로 다른 차원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³³⁾ 첫째로 정치의 내용적 행동계획으로서 “Policy”이다. 예를 들면 교육정책, 경제정책, 국내정책, 외교정책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Policy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이익이나 과제와 관련되어진다. 두번째로는 “Politics”로서 이는 정치의 절차적 차원으로서 이해되어진다. 의사형성과정이나 결정과정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는 Policy가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관심사가 된다. 따라서 Politics의 차원에는 지배·권력·갈등과 같은 요소들이 기초를 이루게 된다. 세번째로는 정치적 행위를 위한 조건이나 행동범위로서의 “Polity”이다. 이는 정치의 형식적인 차원으로서 간주되며 헌법, 법률서, 정치문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세가지로 대별되어지는 정치의 기본개념들을 개관하여 보건데 정치교육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과 교수개념이 생겨나고 공존하며 경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가지의 정치개념으로 부터 연유된 결과로 간주되어진다. 왜냐하면 정치교육의 대상이 정치인 이상 정치교육의 학습목표, 학습내용 및 방법은 정치를 보는 시각, 즉 정치의 어느 차원을 중시하고, 어느 차원을 경시하느냐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란 Polity의 기초하에 Politics의 도움으로 Policy를 실현하는 것”³⁴⁾으로서 이 세가지 차원은 정치의 현실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함께 연결되어 있음에 동의한다면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올바른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정치의 세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Wolfgang Hilligen이 제기한 바 있는 학교의 정치교육에 있어서 소위 동의문제(Konsensproblem)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시사로 여겨진다: “이론상(정치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는 실제 수업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기본적인 정치적 쟁점들은 토론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³⁵⁾

그러나 정치교육의 실제에 있어서 정치의 세가지 차원이 동시에 고려된다 할지라도 과연 어떤 척도로 정치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즉 정치에 있어서 무엇을 ‘옳은 것’으로, 또는 ‘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Karl Rohe는 “정치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공동생활이나 인간집단들이 문제시 되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대되어지고 있다. 정치는 항상 사회적 공동생활의 일정한 고난으로 부터 발생하고 있다”³⁶⁾고 함으로써 인간들의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질서화 시키는 것이 정치에 기대되는 핵심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Anorld Bergstraesser는 정치를 “인간집단에 대한 지도를 질서화하고 성취시키는 예술”³⁷⁾로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견해에 전적

33) Karl Rohe: Politik, Begriffe und Wirklichkeiten, 1. Auflage, Stuttgart 1978, S. 349 - 359 참조.

34) Karl Rohe: A. a. O., S. 68.

35) Wolfgang Hilligen: Zur Didaktik des politischen Unterrichts, 4. völlig neu bearbeitete Auflage Schriftenreihe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d. 228, Bonn 1985, S. 27.

36) Karl Rohe: A. a. O., S. 158 - 159.

37) Ulrich von Alemann: Politikbegriffe, in: Dieter Nohlen/Rainer - Olaf Schultz(Hrsg.): Pipers Wörterbuch zur Politik, Bd. 1. Politikwissenschaft, München 1985, S. 706에서 재인용.

으로 동의하면서도 우리들의 공동생활의 형성에 있어서 어떤 내용과 목표가 추구되어야 하며 또 정치란 어떤 형태의 공동생활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생활의 형태는 구성원들이 인격체로써 만남이 가능한 공동체 생활로서,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간주되는 인격체들의 공동생활인 것이다.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자유와 평등의 보장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란 자율적이며, 스스로 결정하며, 양심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인격체들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공동생활의 기초를 마련하고 그의 실현을 위해 정진하여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치가 그 실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공공의 복지, 정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범주야말로 정치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본척도이며, 지배·권력·갈등과 같은 정치적 현상들은 정치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나 사회속에서 인격체들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공동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치의 의도가 그렇지 못한 경우 비민주적, 독재적, 전체주의적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인간의 집단화내지는 인간의 존엄성 말살과 같은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정치교육은 이런 척도에 따라 학생들이 정치적 현실을 측정할 수 있는 판단능력과 통찰력을 키우며, 올바른 정치적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는 일에 보다 큰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교육에 부과되는 네번째의 본질적과제는 “책임에 대한 확신상태”³⁸⁾가 그 핵심인 정치적 책임의식을 진작시키는 일이다.

책임이란 “요청할 권리를 갖고 있는 관계되는 모든것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인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결과나 과실에 대하여 해명을 할 수 있는 원숙한 도덕적인 결정, 준비성과 자질”³⁹⁾을 뜻한다. 이 정의에 언급된 관계되는 모든것이라 함은 본인자신, 자신의 동료, 신, 사회·문화적 제도나 자연을 의미한다. Johannes Schwartländer에 따르면 이 관계되는 모든것은 “개인적”차원과 “보편적”차원으로 구별되는데 양자는 공동적으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⁴⁰⁾ 왜냐하면 “책임의 완전한 경험이란 자신의 독자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과 세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결합된 양자의 기본관계를 요구하며, 바로 이런 구체적인 결합속에 책임의 참된 실체가 존재”⁴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책임의 개념을 정치와 연결시켜 볼 때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은 정치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자신에 대한 책임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여야 된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독자적인 정치적 관심의 관철, 공동의 정치적 목표달성 및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실현과 같은 정치의 과제완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 및 공동책임을

38) Günter Kirchhoff: Verantwortung, 2. überarbeitete Auflage, München 1983, S. 90에서 재인용.

39) A. a. O., S. 88.

40) Johannes Schwartländer: Verantwortung, in: Hermann Krings u. a.(Hrsg.):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Bd. 6. Studienausgabe, München 1974, S. 1582.

41) A. a. O.

지는 정치적 책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자발적으로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속에서 책임을 인지하고 완수한다함은 그의 이념과 원칙들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속에서 그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적 현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각 개인은 그 개선의 가능성과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일에 솔선하여야 할 것이다. 누구도 이 책임을 거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공동체생활의 실현은 구성원 각자가 그의 형성에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학생들 각자가 이 과정을 자기책임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데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적 무관심은 우선적으로 타파되어야 한다. 정치적 무관심의 타파야말로 정치적 참여를 위한 기본전제인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의 극복은 “민주주의는 그의 시민들의 정치적·사회적 참여에 의해 존속할 수 있다”⁴²⁾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치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이미 주어진 어른형성과정과 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능성과 협력가능성을 제시해주며 그것이 학생들 개개인과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개인의 정치적 참여는 구체적인 행동규칙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교육이 민주적인 태도형성을 지향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Lothar Bossle는 “민주주의 규칙에 기초한 행동기술의 정복”⁴³⁾이야말로 민주적인 태도함양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위한 기초로서 관용·타협의 정신과 갈등해소와 동반자적인 협동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야만 할 것이다.

정치적 참여능력의 배양이라함은 모든 학생들에게 단순한 정치적 활동 즉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이 정치적 행동주의에 빠지도록 선동·획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치적 행동추구위주의 인간을 주조하려는 것은 정치교육의 과체에 대한 큰 오해인 것이다.”⁴⁴⁾ 학생들이 급진적인 과격집단에 의해 맹목적인 정치적 행동주의의 수단 내지는 전위대로 오용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오로지 정치적 책임의식을 지닌 인간의 양성, 즉 민주적 행동양식을 바탕으로한 정치참여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의 양성을 위해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VII. 결 론

정치적으로 성숙된 인간의 양성을 궁극적인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정치교

42) Siegfried Schiele: Politische Bildung im öffentlichen Auftrag - Chancen und Gefahren, i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 - Württemberg(Hrsg.): Politische Bildung im öffentlichen Auftrag, Stuttgart 1982, S. 27.

43) Lothar Bossle: Sorge um das Gleichgewicht, Würzburg o. J., S. 230.

44) Ders: Politische Bildung - Durchbruch oder Krise, a. a. O., S. 115.

육은 교육적 시각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교육행위로서, 민주적인 생활양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국가형태의 보장을 위하여 부과된 교육적 책임에 그 존립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인격체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신장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며 국가와 사회에서 인격체들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공동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통찰력을 일깨우는 일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교육은 민주주의를 단지 하나의 과제로서 표시한채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이 국가와 우리들의 확고한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며 모든 문제시에는 하나하나 자각시켜야 할 것이다.”⁴⁵⁾

끝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만약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체제의 안정과 개선의 보장에 대한 필요가 절실하다면, 앞서 언급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기능과 과제를 진지하게 시인하여야 하며 그의 실현에 필요시되는 여러가지 기본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교육은 정치에 의존적이며 역으로 정치는 정치교육에 의존적인 것이다. 이런 상호관계는 부인되어서는 아니될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극찬 : 정치학, 제3전정판, 서울 : 영문사, 1987.

양참삼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 서울 : 배영사, 1982.

von Alemann, Ulrich : Politikbegriffe, in : Dieter Nohlen/Rainer - Olaf Schultze(Hrsg.): Pipers Wörterbuch, Bd. 1, Politikwissenschaft, München 1985.

Assel, Hans - Günther : Demokratie auf dem Prüfstand, 2. Auflage, München 1974.

Bergstaesser, Arnold : Politik in Wissenschaft und Bildung, 1. Auflage, Freiburg 1961.

Bossle, Lothar : Politische Bildung - Durchbruch oder Krise? Mainz 1966.

Ders. : Demokratie ohne Alternative, Stuttgart 1972.

Ders. : Sorge um das Gleichgewicht, Würzburg o. J.

Briese, Volker u. a. : Einleitung : Welchen gesellschaftlichen Bedingungen politische Bildung unterliegt, in : Ders. u. a.(Hrsg.): Entpolitisierung der Politikunterricht? Weinheim 1981.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 Zur Situation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r Schule, Schriftenreihe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d. 185, Bonn 1982.

Catalfamo, Giuseppe : Ideologie und Erziehung, übers. von Liselotte Reich - Coregliano und durchges. von Winfried Böhm, Würzburg 1984.

Derbolav, Josef : Pädagogik und Politik, Stuttgart 1975.

Dewey, John : Demokratie und Erziehung, übers. von Erich Hylla, Braunschweig 1949.

Erlar, Fritz : Politik für Deutschland. Eine Dokumentation, hrsg. von Wolfgang Gaebler, Stuttgart 1968.

Fischer, Kurt Gerhard : Einführung in die politische Bildung, 2, durchgesehene Auflage, Stuttgart 1971.

Groothoff, Hans - Hermann : Einführung in die Erziehungswissenschaft, Ratingen - Kastellaun 1975.

Grosser, Dieter : Politische Bildung. Grundlagen und Zielprojektionen für den Unterrichts an

45) Josef Derbolav : Pädagogik und Politik, a. a. O., S. 70.

Schulen, 3. Auflage, Stuttgart 1978.

Grube, Frank/Richter, Gerhard *Demokratietheorien*, Hamburg 1975.

Hartmann, K.D.(Hrsg.) : *Politische Bildung und Psychologie*, München 1980.

Hättich, Manfred : *Demokratie als Herrschaftsordnung*, Köln 1967.

Hilligen, Wolfgang : *Zur Didaktik des politischen Unterrichts*, 4. völlig neu bearbeitete Auflage
Schriftenreihe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d. 228, Bonn 1985.

Kirchhoff, Günter : *Verantwortung*, 2. überarbeitete Auflage, München 1983.

Krings, Herrmann u. a.(Hrsg.) :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6 Bde,
Studienausgabe, München 1973.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 - Württemberg(Hrsg.) : *Politische Bildung im
öffentlichen Auftrag*, Stuttgart 1982.

Messerschmid, Felix : *Politische Bildung - "Opium fürs Volk?"* in : *Neue Sammlung*, 8, Jahrgang
1968, S, 221 - 233.

Nohlen, Dieter/Schultz, Rainer - Olaf(Hrsg.) : *Pipers Wörterbuch zur Politik*, Bd, 1,
Politikwissenschaft, München 1985.

Oetinger, Friedrich : *Partnerschaft - Die Aufgabe der politischen Erziehung*, dritte, erneut
verbesserte und erweiterte Auflage, Stuttgart 1953.

Rohe, Karl : *Politik Begriffe und Wirklichkeiten*, 1, Auflage, Stuttgart 1978.

Roos, Lothar : *Demokratie als Lebensform*, München 1969.

Sander, Wolfgang : *Politische Bildung im öffentlichen Auftrag*, Stuttgart 1982.

Schmiederer, Rolf : *Zur Kritik der politischen Bildung*, Frankfurt am Main 1971.

Ders : *Zur Problematik politischer Bildung in der Schule*, in : Heinrich Schneider(Hrsg.) :
Politische Bildung in der Schule, Bd. 2, Darmstadt 1975.

Schneider, Heinrich(Hrsg.) : *Politische Bildung in der Schule*, 2 Bde, Darmstadt 1975.

Schön, Konrad : *Der Begriff der politischen Bildung*, Ratingen 1964.

Schwartländer, Johannes : *Verantwortung*, in Hermann Krings u. a.(Hrsg.) : *Handbuch
philosophischer Grundbegriffe*, Bd. 6, Studienausgabe München 1973.

Wortmann, Wilhelm : *Demokratie als politische Bewusstseinsbildung*, Heidelberg 1968.